

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분류인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가 제8판으로 개편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5년까지 사용된 국제특허분류 제7판과 달리, 현행 제8판에서 특허 눈여겨 볼 점은 점점 세분화되고 변화하는 기술동향과 인터넷에 의한 선행기술검색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통지식을 살펴보자. 요즘 각 국가마다 고유의 전통지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통지식의 보호·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경주되고 있다.

전통지식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식물약재(植物藥材)의 경우, 기존의 국제특허분류 제7판에서는 식물약재가 조류(藻類), 지의류(地衣類), 균류(菌類), 기타식물 4가지의 광범위한 분야로 되어 있었으나, 현행 제8판에서는 감초, 황기, 영지, 오갈피, 인삼 등 식물약재를 구체적인 식물명 204가지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세분화된 식물약재 특허분류는 앞으로 관련 선행기술의 축적 및 검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국제특허분류 제7판의 기술분야 67,634개에서 68,727개의 기술분야로 기술분야의 개수는 1.6%만 증가하였지만, 내용면에서는 최근의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기존 제7판 기술분야의 약 10%에 달하는

7,000 여 개의 기술분야에 변동이 있었다.

〈국제특허분류 기술분야 개수 변동 비교〉

기존 국제특허분류	현행 국제특허분류('06.1.1.~)
67,634개	➔ 68,727개 (1.6%증가)
내용면으로는 7000 여 개(약 10%) 기술분야 변동	

현행 국제특허분류가 기존과 달라진 또 한 가지는 기술흐름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주기가 짧아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5년 주기로 국제특허분류를 개정하였으나, 이제는 급변하는 기술동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3개월)로 특허분류의 개정이 가능해지며, 한편 개정된 국제특허분류에 따라 기존의 특허문헌을 재분류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선행기술 검색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특허검색을 위한 전산환경의 발전에 발맞추어 자신이 발명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미리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보는 사용자가 늘어가고 있으며, 특허권 확보를 위한 전단계로 선행기술 검색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방대한 기술분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국제특허분류 8판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계절 상표의 으뜸은 역시 봄!

4계절 중 “봄” 단어가 포함된 상표출원을 가장 선호

특허청에서 계절과 관련된 상표의 출원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계절 표시가 포함된 상표 중 첫 번째 계절인 “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출원건수를 보면, 2005년 12월 말 현재 “봄(春, spring 포함)”이 73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여름(夏, summer 포함)” 576건, “겨울(冬, winter 포함)” 295건, “가을(秋, autumn 포함)” 150건으로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봄(春)은 한 해의 4계절 가운데 첫번째 계절로 겨울과 여름 사이 즉 입춘(2월 4일경)에서부터 입하(5월 6일경) 전까지를 말하고, 천문학적으로는 춘분에서부터 하지까지가 봄이지만, 기상학적으로는 3월에서 5월까지를 봄이라고 하는데, 출원인들이 “봄”을 선호하는 이유는 “봄”이 겨울의 고요함에서 깨어나 만물이 소생하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의미가 담겨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계절의 명칭을 사용하여 출원한 상표는 각 계절의 특색을 나타내는 단어를 결합하여 출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늘봄(38건)”, “여름향기(21건)”, “가을햇살(10건)”, “겨울연가(24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계절 명칭을 많이 사용한 업체는 태평양(47건), 웅진식품(39건), 롯데삼강(2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허청 정진대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은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계절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성질(시기)표시에 해당되므로 계절표시와 식별력있는 다른 문자 또는 도형을 결합하여 출원하여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국제특허분류란?

- 국제특허분류(IPC)는 1975년 발효된 「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 협정」에서 채택된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분류기준으로써, 7자리부터

많게는 12자리까지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의 조합을 통하여 기술분야를 나타낸다.

국제특허분류의 세부 분류기호 즉 기술분야 개수는 무려 68,000 여 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세분화되어 있다.

담배상표, 10대 다등록업체 발표(1위 KT&G)

특허청은 상표출원등록 사무를 시작한 1950년 3월부터 2005년 말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등록된 담배관련 상표의 등록현황과 10대 다등록 업체명단을 발표하였다.

지난 50 여년 동안 등록된 총 2,963건 중 외국인은 1,594(53.8%)건으로 1,369(46.2%)건을 등록한 내국인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등록업체 1위는 우리나라의 케이티앤지(KT&G: 전 한국담배인삼공사), 2위는 스위스의 필립모리스 프로덕츠, 3위는 영국의 브리티슈 아메리칸 토바코로 집계되었다.

연대별 등록현황을 보면, 외국기업은 1950년대부터 국내에 꾸준히 상표등록을 하여왔으나, 우리나라는 60년대 말 ‘파고다’를 시작으로 80년대 구 전매청이 한국 전매공사로 출범하면서 ‘거북선, 한강’, ‘은하수’ 등을 본격적으로 상표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배에 관한 최초등록상표는 1954년 10월에 등록된 미국 아이르제이레날드 스트로바코의 ‘CAMEL’ (상표등록 제468호)이며 내국인은 1969년 5월에 등록된 구 전매청의 ‘파고다’ (상표등록 제17373호)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도 8.15해방 기념담배 ‘승리’, 정부수립기념담배 ‘개명’, 기타 6.25이후 60~70년대까지 ‘백두산’, ‘건설’, ‘장수연’, ‘파랑새’, ‘무궁화’ 등 수십종의 담배를 생산·판매하였으나 상표등

록을 하지 않은 채 그 수명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 졌다.

1980년 이전에는 주로 외국인이 상표등록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의 판매는 1989년 3월까지, 제조는 2001년 3월까지 독점체제였으므로 브랜드 관리의 필요성이 적었다고 볼수 있으나,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자사브랜드와 동일유사한 모방상표를 경쟁사업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브랜드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온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인터브랜드사가 선정한 2005년 세계 100대 브랜드 중 다국적기업 필립모리스의 ‘말보로(국내 상표등록 제818호, 1955.6.3 등록)’가 10위(212억불)에 선정된 것도 장기적인 브랜드관리에 역점을 둔 것으로 무역장벽이 무너진 WTO체제 하에서 상표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는 담배의 제조나 판매에 관한 독점이 해제 됨으로 인하여 내·외국인간 시장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저타르, 향, 거담제, 각종약재 첨가 등 기능성 웰빙담배 제품의 개발은 물론 장기적인 상표관리에 역점을 두어 “장수상표”를 확보하는 것이 담배제조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심판 등록제도 개선

일부확정등록제도 도입으로 분쟁해결 단축

특허심판원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한 일부확정등록을 위한 세부시행절차를 마련하여, 금년 1월 이후(그 이전의 경우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한함)의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확정등록제이란, 복수 개의 청구항(디자인 대상 물품,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심판이 청구되어 심결 후 일부의 청구항에 관하여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일부 청구항에 대한 심판결과를 우선 등록하여 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특허심판원이 발표한 일부확정등록 세부시행절차에 따르면, 특허법원으로부터 심결취소소송 제기통보를 받은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일부확정등록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일부확정등록 사항인 경우 이를 먼저 등록하고, 이와관련 심결의 일부만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판결의 내용으로부터 일부확정등록 사항을 확인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특허법원 판결 중 일부 청구항에 관한 부분만 대법원에 상고제기된 경우에 있어서도, 상고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일부 청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일부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특허심판원

에 접수하면, 확인 후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시행절차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사건 일부에 대한 확정 심결이 있어 사실상 분쟁이 종결되었음에도 그 심판결과가 적시에 등록원부에 등재되지 않아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 한편,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조기에 활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효로 확정된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도 등록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사건 전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심판결과가 등록원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행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나아가 일부 청구항에 관한 무효 여부 등이 소송단계별로 적시에 공시됨으로써, 제3자 및 당사자로서는 일부확정된 심판결과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등록료의 부당 부과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 특허청